

용역계약서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에 본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이하 “갑”이라 함)와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658번길 35(내삼미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파인솔루션(이하 “을”이라 함)은 2016. 11. []에 다음과 같은 용역계약서(이하 “본 계약”)를 체결하고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약정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수행하는 Backbone 내재화 및 제작 이원화 사업(이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수집된 기술 정보를 Migration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을”的 인력을 파견하기로 하고 그러한 인력 공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업무의 내용 및 투입인력)

-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제반 기술수준, 수행 업무의 내용 및 절차, 업무 지침 및 수행 방법 기타 “갑”的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을 공급하여 아래의 업무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다.
 1. 외부로부터 수집된 Max. 3.0 version의 Backbone 설계 도면의 migration 업무
 2. 도면 내재화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
 3. 기타 “갑”이 지시하는 업무
- ② “갑”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원에 관한 구체적인 자격 사항을 명시하여 “을”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을”은 자신의 임직원 중 본건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원을 확보하여 “갑”的 사업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본건 용역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인력 정보는 별첨 1.에 규정한다.
- ③ “을”은 투입인력의 명단을 “갑”에게 제출하여 “갑”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용역의 대가 및 지급)

- ① 본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갑”에게 투입된 인원들에 대한 용역비용은 “을”이 본 계약 기간 동안 매월 말까지 “갑”에게 용역대금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갑”은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당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이 제공한 계좌 정보로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본 용역업무의 수행에 따른 용역대금은 “을”이 투입한 인력들의 근무 일수에 대한 인건비를 그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만약 “갑”的 요청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을”이 투입한 비용에 관하여는 그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실비 정산할 수 있다.
- ③ “을”이 투입한 인력들이 야간 근무, 주말 근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갑”은 정확한 추가 근무의 시간과 일수 등을 “을”이 제공하는 증빙 서류 등을 통해 검토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추가 근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제공한 추가 근무에 관한 증빙 서류가 “갑”이 확인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을”이 청구한 용역대금청구서의 내용 또는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오류 사항을 “을”에게 유선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을”은 당해 통지를 받은 즉시 수정된 청구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을”的 청구서, 계산서 발행 오류 또는 “을”的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산서 등의 발행이 지연된 경우, “갑”은 당해 지연되어 재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투입인력의 조정)

- ① “갑”이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용역인력을 증감할 경우에는 “갑”과 “을”的 협의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만약 “을”이 투입한 인력의 업무 수준 또는 기술 수준이 본건 업무의 수행에 부합하지 아니 하여, “갑”이 그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갑”과 협의하여 “갑”이 요구하는 자격 인원에 적합한 인력을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인력 투입(교체 투입을 포함한다)을 지연하여 특정 기일 동안 용역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갑”은 당해 지연된 기간만큼의 용역 비용을 공제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연된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구체적인 용역금액에 관하여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용역수행의 조건)

- ① 본 용역수행에 따르는 PC, 노트북, 프로그램, 기타 정보기기 및 장비와 근무장소,

집기부품, 이메일 계정, PC 환경, 보안프로그램 등 제반 환경은 “갑”이 제공하며, “을”의 투입인력은 “갑”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을”의 투입 인력들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업무 수행을 “갑”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수행할 수 없고, “갑”이 제공한 어떠한 물품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② “을”은 자신이 투입한 인력들이 본건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갑”이 제공한 집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즉시 “갑”에게 그러한 항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갑”은 실제 업무 수행에 당해 항목들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 및 작성한 일체의 자료와 결과물 등은 “갑”的 소유이며, “을”은 이에 대한 여하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 ④ “을”은 본 용역업무의 수행에 투입된 인력들이 “갑”的 지시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러한 사항을 교육 및 인지시켜야 하며, “갑”的 정당한 업무 지시를 해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갑”的 요청에 따라 그 즉시 해당 인력을 교체하거나 “갑”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7년 1월 말까지로 하며, 양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당사자들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을” 또는 “을”이 투입한 인력이 본 계약서를 위반하거나 “갑”的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 해태, 태만, 위반하는 경우, “갑”的 사전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 및 일체의 사항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을”은 본건 용역수행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 받은 일체의 유무형의 자료를 “갑”的 영업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본건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들 외에는

“을” 내부 임직원에게도 본 용역업무와 관련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을” 및 “을”的 투입인력들은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비밀로써 유지하여야 하고, “갑”的 관련 업무 수행자들 이외의 임직원 및 “을”的 임직원들에게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갑”은 본건 용역수행에 관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을”이 투입한 인력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안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을” 및 투입 인력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을”的 투입 인력이 보안서약서의 작성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당해 인력의 본건 업무 수행에 제외시킬 수 있다.
- ④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엄격히 비밀을 유지하고 본 계약서를 외부에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본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본 계약서에서 언급된 상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을”的 투입 인력들은 “갑”的 사업장에 파견되는 동안 “갑”的 보안, 환경안전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갑”은 “을”的 투입인력들에 대한 개인 정보가 본건 업무 수행의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정보를 업무 수행의 목적 이외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반조항)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갑”的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이 1심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다.

위 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모두에 기재된 일자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6년 11월 [22]일

갑: 주식회사 원의아이피에스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대표이사: 변정우



을: 주식회사 파인솔루션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658번길 35

대표이사: 박희원



[별첨 1.] 투입 인력에 관한 정보

1. 성명: 이동규 대리 (851004-1253510) - 현장대리인
 2. 연락처: 010-2288-5542
 3. 주소: 경기도 오산시 현충로72번길 41 (은계동) 101동 1704호
-
1. 성명: 임춘근 대리 (870513-1058017)
 2. 연락처: 010-3001-9039
 3.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354-11 (능동) A동 801호 (능동)
-
1. 성명: 정민지 사원 (930930-2037710)
 2. 연락처: 010-2366-9300
 3. 주소: 경기도 평택시 점촌로13번길 6 (서정동) 2층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본인은 (주)원익아이피에스(이하 '회사'라 함)와의 Backbone 제작 이원화에 따른 수집 정보의 Migration 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서에 따라 '회사'에 계약 기간 동안 상주하는 협력사원으로서 영업비밀 기타 정보자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 방문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이하 '영업비밀'이라 함)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방문 중 취득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 및 기타 영업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 (1) Backbone 설계, 도면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Migration 작업 및 그에 관한 일체의 정보
 - (2) 제품의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및 일지의 내용,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 (3) 제품의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 (4) 인사, 조직, 마케팅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
3. 본인은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회사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반드시 준수 하겠습니다.
4. 본인은 회사 방문 중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 하지 않겠으며, 이의 방지를 위한 통제 및 검열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5. 본인은 본 서약서에 따른 각 서약사항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등의 죄책, 기타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겠으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6. 본인이 회사를 왕래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임직원과 공동으로 발명, 발견,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 사용, 처분 등의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며, 왕래 중 또는 업무의 종료 이후라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절대로 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회사와의 업무수행 중은 물론이고 종료 이후에도, 회사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 관련 권리의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권리를 타에 양도하는 경우, 회사요청에 따라 도면, 명세서, 확인서 등 그에 필요한 제반 문서나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작성업무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본인은 본인의 업무종료 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 기타 정보자산이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9. 본인은 업무수행 종료 이후에도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기 내용을 세심히 읽어 보았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상기 내용을 세심히 읽어 보았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소 속 : (주) 자연솔루션
주민등록번호 : 870513-1058017
성 명 : 임춘근 서명.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귀하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본인은 (주)원익아이피에스(이하 '회사'라 함)와의 Backbone 제작 이원화에 따른 수집 정보의 Migration 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서에 따라 '회사'에 계약 기간 동안 상주하는 협력사원으로서 영업비밀 기타 정보자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 방문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이하 '영업비밀'이라 함)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방문 중 취득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 및 기타 영업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 (1) Backbone 설계, 도면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Migration 작업 및 그에 관한 일체의 정보
 - (2) 제품의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및 일지의 내용,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 (3) 제품의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 (4) 인사, 조직, 마케팅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
3. 본인은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회사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반드시 준수 하겠습니다.
4. 본인은 회사 방문 중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 하지 않겠으며, 이의 방지를 위한 통제 및 검열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5. 본인은 본 서약서에 따른 각 서약사항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등의 죄책, 기타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겠으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6. 본인이 회사를 왕래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임직원과 공동으로 발명, 발견,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 사용, 처분 등의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며, 왕래 중 또는 업무의 종료 이후라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절대로 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회사와의 업무수행 중은 물론이고 종료 이후에도, 회사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 관련 권리의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권리를 타에 양도하는 경우, 회사요청에 따라 도면, 명세서, 확인서 등 그에 필요한 제반 문서나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작성업무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본인은 본인의 업무종료 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 기타 정보자산이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9. 본인은 업무수행 종료 이후에도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파인솔루션
주민등록번호 : 910910-203410
성명 : 정민지 (필자)
상기 내용을 세심히 읽어 보았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상기 내용을 세심히 읽어 보았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귀하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본인은 (주)원익아이피에스(이하 '회사'라 함)와의 Backbone 제작 이원화에 따른 수집 정보의 Migration 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서에 따라 '회사'에 계약 기간 동안 상주하는 협력사원으로서 영업비밀 기타 정보자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 방문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이하 '영업비밀'이라 함)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방문 중 취득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 및 기타 영업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 (1) Backbone 설계, 도면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Migration 작업 및 그에 관한 일체의 정보
 - (2) 제품의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및 일지의 내용,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 (3) 제품의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 (4) 인사, 조직, 마케팅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
3. 본인은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회사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반드시 준수 하겠습니다.
4. 본인은 회사 방문 중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 하지 않겠으며, 이의 방지를 위한 통제 및 검열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5. 본인은 본 서약서에 따른 각 서약사항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등의 죄책, 기타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겠으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6. 본인이 회사를 왕래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임직원과 공동으로 발명, 발견,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 사용, 처분 등의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며, 왕래 중 또는 업무의 종료 이후라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절대로 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회사와의 업무수행 중은 물론이고 종료 이후에도, 회사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 관련 권리의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권리를 타에 양도하는 경우, 회사요청에 따라 도면, 명세서, 확인서 등 그에 필요한 제반 문서나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작성업무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본인은 본인의 업무종료 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 기타 정보자산이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9. 본인은 업무수행 종료 이후에도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기 내용을 세심히 읽어 보았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상기내용을 세심히 읽어 보았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소 속 : 파인솔루션
주민등록번호 : 751004 - 1253510
성 명 : 이동기 (서명).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귀하